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2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총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**법무통계담당 심사필**

##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2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### 1. 제정이유

- 군 소속 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시 군예산으로 군장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고, 유가족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자함.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장례 구분(안 제1조 ~ 제2조)

-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
- 장례 구분 : 고령군장(이하 군장), 고령군민장(이하 군민장)  
고령군청장(이하 군청장)

#### 나. 적용 범위(안 제3조)

-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여 적용

#### 다. 군장 등의 대상자(안 제4조)

- 군 장 : 현직 군수, 현직 의회의장
- 군민장 : 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등
- 군청장 :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 시

#### 라. 장례 비용(안 제13조)

- 군장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근거 규정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8조(사회보장)
- 「국가장법」
-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

나. 예산관련 사항 :

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의견 없음(2022. 04. 11. ~ 2022. 05. 02.)

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사항(개선사항) 없음(2022. 02. 14.)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

##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장례 구분)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고령군장(이하 “군장”이라 한다) · 고령군민장(이하 “군민장”이라 한다) · 고령군청장(이하 “군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군장 · 군민장 · 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하되, 필요한 경우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4조(군장 등의 대상자) 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.

1. 현직 군수
2. 현직 의회의장

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.

1.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
2. 재난 · 범죄로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· 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령군민

③ 군청장은 현직 고령군 소속 공무원 및 [「고령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](#)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제5조(대상자 결정) ① 군장·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고령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또는 고령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제청이나 군민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의 제청으로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고령군장례위원회 설치)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고령군장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군장·군민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군수([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](#)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)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고령군의회 의장
2. 고령경찰서장
3.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
4. 고령소방서장
5. 고령문화원장

6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,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.

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여부 심의·결정
2. 장례의 일시,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
3. 장례에 드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
4.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

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장례 기간 등)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「[건전가정의례준칙](#)」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.

제12조(장례 공고) 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장 등 장례가 결정되면 위원회 이름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.

제13조(장례 비용) 군장 등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되,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「[국가장법](#)」 제5조 및 [같은 법 시행령 제6조](#)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## 장 제 용 품 등 기 준

사항별	규격	수량	비고
1. 영결식장 설치	면적 6m×3m 높이 4m 이하	1식	영결식장 현판 제단, 천막, 의자, 음향장치 등 일체
2. 영구차	중~대형	1대	1일간
3. 제물상 등		1식	
4. 조문용품 가. 영정사진 나. 헌화 다. 흉화 라 헌화용 국화 마 근조리본 바. 장갑 사. 영구차 리본	대 특대 흑색 백색 흑색 백색 대형	1조 1개 30개 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 이하	장례위원장용 유족 및 장례위원용
5. 조화	대형	1개	위원장 명의
6. 안내문 인쇄	모조 32절 180g/m <sup>2</sup>	1,000매	위원회 명의
7. 현수막	게시대 용	10매 이내	
8. 기타비용	가. 영결식 기자재 등 나. 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다. 기록보존 녹음		

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총무과	
연 락 처	054-950-6082